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ESG 규정집	문서번호 : ESG-207
	협력사 규범 규정	제정일자:2024.01.02 개정번호 : 0 페이지 : 1 / 8

작 성	검 토	승 인
		

NO	일 자	개 정 내 용	개정조항	비고
0	2024.01.02	ESG 규정 요구사항을 근거로 본 규정서 제정	-	

제1장 개요

제1조(정의) (주)삼양금속(이하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협력사의 거래업체 등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지향적인 혁신이 진행 중이며 당사는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업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규범은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운영시스템 각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당사의 모든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력사의 규범 준수에 대해 당사는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수 있으며 협력사는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한다 본 규범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제2장 윤리

제2조 투명경영

1) 협력사의 임직원은 뇌물수수 횡령 청탁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된다.

제3조 불공정 거래 방지

- 1) 협력사는 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며 상생관계를 추구한다.
- 2) 협력사는 시장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사는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조 정보보호

1) 협력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이나 사용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협력사는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제3장 환경

제5조 환경경영체계

1) 협력사는 사업장의 환경경영을 위해 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온실가스 관리

1)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협력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제7조 용수/폐수 관리

1) 협력사는 용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한다.

2) 협력사는 용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제8조 폐기물 관리

1) 협력사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협력사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을 관리한다.

제4장 노동/인권

제9조 차별금지

1) 협력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는 하지 않는다.

2)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복리후생

- 1) 협력사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한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법률에서 제시하는 의무 교육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인도적 대우

- 1)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 2) 협력사는 업무시간 이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근로시간

- 1) 협력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근무의 경우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노동법 준수

- 1)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 발생시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강제노동은 금지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결사의 자유

- 1)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 2)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안전/보건

제15조 안전·보건 체계

- 1)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절차, 결과 등의 체계를 운영한다.
- 2) 협력사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설비 등의 안전 관리

- 1)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 2) 협력사는 사업장 내 설비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제17조 사고 관리

- 1) 협력사는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협력사는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18조 보건

- 1)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식당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운영시스템

제19조 규범 공유

- 1)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신년사 사내게시판 및 그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 2)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대내 외에 전파해야 한다.

제20조 사내소통

- 1) 협력사는 행동규범의 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제도에 대해 임직원에게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정보관리

- 1) 협력사는 행동규범에 명시되는 각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2조 신고제도 운영

- 1) 협력사는 임직원이 행동규범 각 분야의 위반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23조 규범 준수

- 1)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적절한 문서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 2) 협력사는 본 규범을 적절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운영 중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